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75
----------	-----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관람료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 나. 관람료 감면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다. 관람 등의 제한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라. 환급 등의 적용에 대해 정함(안 제6조)
- 마. 공유재산법 등의 준용에 대해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2.1.14. ~ 2022.2.3.) 결과, 의견제출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344, 1539-1, 산538번지 일원의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이하 “광천선굴테마파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람료) 광천선굴테마파크의 동굴 관람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65세 이상의 노인
6.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7.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조(관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2. 음주 등 그 밖의 원인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관람에 위험 또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천선굴테마파크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환급 등의 적용)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 또는 배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준용) ① 광천선굴테마파크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등을 준용한다.

② 관람료 징수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천선굴테마파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굴 관람료(제3조, 제4조 및 제6조 관련)

1. 주굴에 대한 일반 관람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개인	5,000원	4,000원	3,000원
단체(10인 이상)	4,000원	3,000원	2,000원

2. 지굴에 대한 체험 관람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개인	10,000원	8,000원	6,000원
단체(10인 이상)	8,000원	6,000원	4,000원

비고

1. “성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은 13세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배상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별표 II 중 제31호 여행업 중 국내여행의 기준을 적용한다.
5. 관람료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신분증 또는 서류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6.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은 별표 1과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별표 I>

대 상 품 목			
번호	업 종	품 종	해 당 품 목
31	여행업	○ 국내여행	
		○ 해외여행	

<별표 II>

품 목 별 해 결 기 준

31. 여행업(2개 업종)

국내여행 (1-4)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함.

국내여행 (2-4)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진) <당일여행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전액 환불 o 요금의 10% 배상 o 요금의 20% 배상 o 요금의 30% 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전액 환불 o 요금의 10% 배상 o 요금의 20% 배상 o 요금의 30% 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계약금 환불 o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30% 배상 	

국내여행 (3-4)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여행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3) 여행사 또는 여행중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계약금 환불 o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불 및 계약금의 100% (위약금) 배상 o 계약금 환불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국내여행 (4-4)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불 o 위약금 50% 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연락처	(033) 330 - 2542

타시군 사례 - 동굴 관람료 [2022. 1. 12.]

(시군) 동굴 <조례명>	지정 종류	규모(km) 전체/공개	관람 방식	구분	노인 (65세이상)	어른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	최근 조례개정
(평창)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마하생태관광지>	천연 기념물	1.8/0.7	가이드 체험	개인 단체	면제, 관람제한	18,000 14,000	14,000 9,000	14,000 9,000	2021.5.7. 개정
(삼척) 환선굴 <대이리군립공원>	천연 기념물	8.5/1.6	단체 관광	개인 단체	(노인) 3,000 2,500	4,500 4,000	(청소년) 3,000 2,500	(어린이,군인) 2,000 2,000	2021.11.12. 개정
(삼척) 대금굴 <대이리군립공원>	천연 기념물	1.6/0.8	가이드 안내	개인 단체	9,000 8,000	12,000 10,000	9,000 8,000	6,000 5,000	
(영월) 고씨굴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천연 기념물	3.4/0.7	단체 관광	개인 단체	1,000 800	4,000 3,000	3,000 2,500	2,000 1,500	2021.11.26. 개정
(정선) 화암동굴 <지정관광지 관람료>	천연 기념물	0.3/0.3	단체 관광	개인 단체	면제	5,000 4,500	3,500 3,000	2,000 1,500	2020.3.30. 개정
(태백) 용연동굴 <용연동굴>	시도 기념물	0.8/0.8	단체 관광	개인 단체	면제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2021.12.31. 개정
(동해) 천황령취동굴 자연학습관 <천곡항금박지동굴 자연학습관>	-	0.6/0.2	단체 관광	개인 단체	면제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2020.12.31. 개정
(단양) 온달동굴 <문화재 공개 관람료>	천연 기념물	1.5/0.4	단체 관광	개인 단체	면제	2,500 2,000	1,500 1,000	1,000 500	2007.1.2. 개정
(단양) 고수동굴	천연 기념물	1.4/1	단체 관광	개인 단체	5,500	11,000 10,000	7,000 6,000	5,000 4,000	
(단양) 천동동굴	시도 기념물	0.5/0.5	단체 관광	개인 단체	무료	6,000 5,000	4,000 3,000	3,000 2,000	
(울진) 성류굴 <성류굴>	천연 기념물	0.9/0.3	단체 관광	개인 단체	1,000 (상품권발급)	5,000 4,000	3,000 2,500	2,500 2,000	2020.12.28. 개정
(제주) 만장굴 <유네스코 등록유산>	천연 기념물	7.5/1	단체 관광	개인 단체	면제	4,000 3,000	2,000 1,500	2,000 1,500	2021.12.31. 개정
(제주) 협재-쌍용굴	천연 기념물	0.5/0.5	단체 관광	개인 단체	9,000 7,000	10,000 8,000	7,000 5,000	6,000 4,000	
(제주) 미천굴	-	1.7/0.4	단체 관광	개인 단체	8,000 6,000	9,000 7,000	6,000 4,000	5,000 3,000	